

운수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(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 등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.

2024년 5월 1일

하 동 군 수

1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현황

지구명	위 치	지정내용			지정사유	관리 기관	비고
		유형	등급	면적			
운수6	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664번지 일원	붕괴 위험	D	4,570㎡	붕괴위험지역 지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	하동군 농산물유통과	

2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: 경상남도 하동군

3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사유

- 사면재해위험도에 의한 평가결과 63점(D등급)으로 판정
- 사면 내에 풍화 및 침식에 의한 뜬돌이 다수 확인됨
- 지속적인 낙석 및 사면유실, 침식 흔적으로 낙석 발생 및 붕괴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지역

4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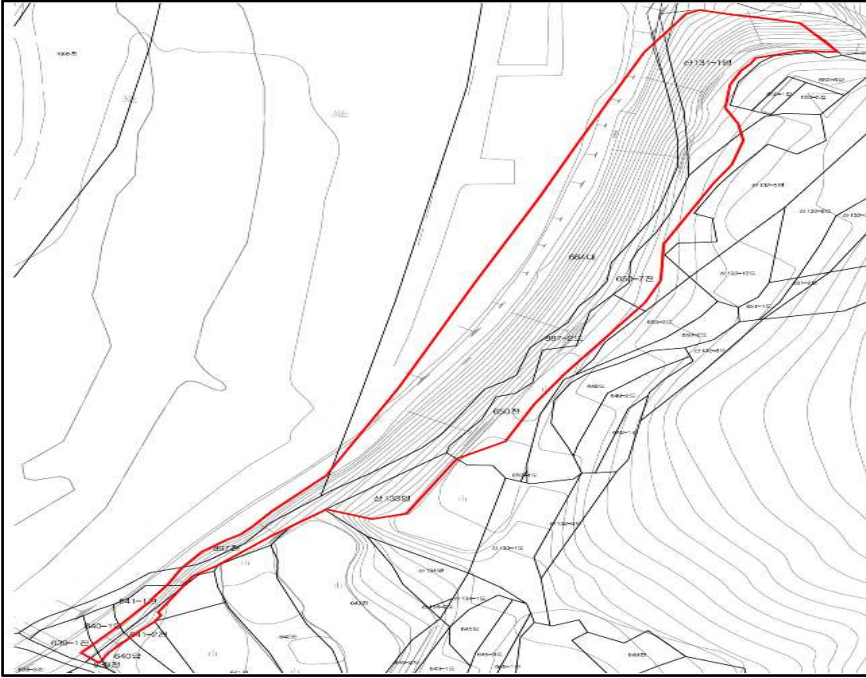
-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
 -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,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
 -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·개축하는 행위
 - 옹벽·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
 -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
 -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
- ※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(하동군 농산물유통과)과 협의하여야 함.

5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: 2024년 05월 01일

6. 문의처 :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(☎ 055-880-2734)

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1부. 끝.

□ 지형도면



□ 현황사진

